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84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충, 최인우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4. 1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4. 16. 접수 제146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C와 신용보증금액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5. 15.부터 2018. 5. 14.까지, 대출예정금액 1억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C는 2017. 5.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D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21. 5. 18.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9. 30. D은행에 C의 대출금 채무 87,200,6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차전3311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10. 18. 'C는 원고에게 87,525,140원 및 그중 87,200,624원에 대하여 2021. 10. 7.부터 2021. 12. 1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1. 12.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C는 2021. 4.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16.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5,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21. 5. 18.부터 2021. 6. 22.까지 사이의 시점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6. 23.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C가 2021. 5.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8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1. 6. 14. D은행에 C에 대한 채권보전요구통지를 한 사실, D은행은 2021. 9. 8. 원고에게 대손판정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22. 1. 28. C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E조합은 2021.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D은행은 2021. 7.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1. 6. 23.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E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2021. 6. 23.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초일 불산입의 원칙상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22. 6. 23.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C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원고는 2021. 9. 30. C의 D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군에 대한 과세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F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는 합계 43,692,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합계 43,000,000원 상당의 어선 및 어업허가권, 2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E조합에 대한 채무 15,227,474원, D은행에 대한 채무 15,061,874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5,280,000원,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27,932,028원, H조합에 대한 채무 13,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86,289,025원 및 85,383,453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그리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1,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I의 소개로 C에게 2021. 4. 13. 20,000,000원을 대여한 점, ② 피고가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한 바로 다음 날인 2021. 4. 1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H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9,500,000원인 근저당권 이외에 가압류 등 다른 제한이 없었던 점, ④ C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C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갚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의 자산상태의 악화나 근저당권설정의 사해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목 록

1.전라남도 목포시

대71.8㎡

2.전라남도 목포시

{도로명 주소}전라남도 목포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2층 주택 및 상점

1층 상점 46.4㎡

2층 주택 46.4㎡

끝.

